선

람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1호

2021. 8. 9(월)

고 시

기관의 장

\bigcirc	남원시	조례	제1691호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0	남원시	조례	제1692호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5
0	남원시	조례	제1693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구조문대비포함	- 8
0	남원시	조례	제1694호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14
0	남원시	조례	제1695호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19
0	남원시	조례	제1696호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24
0	남원시	조례	제1697호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

회					
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8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1691 호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말한다.
- 2.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3.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

- 4.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
- 5. "정보문화"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보문화"를 말한다.
- 6.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7. "정보보호"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를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확정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 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라 한다)을 둔다.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 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 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 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
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片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8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1692 호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 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 5.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편의시설) 시장은 농인 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 제7조(포상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8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1693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사업장의"를 "사업장을"로, "양도(이하"전부"를 "양도(이하 "전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1호 본 문 중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 호"로,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설 시설비"를 "따른 근로환경개선시설(다만, 보육 시설은 제외) 투자비"로 한다.

7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

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을 할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종으"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설(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에 한함)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시의 다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	7
이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	
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	
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	나
업이 국외 <u>사업장의</u> 청산	<u>사업장을</u>
또는 <u>양도(이하"전부</u> 철	<u>양도(이하"전부</u>
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	
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u> 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u>을 말한다.</u>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21. "투자금액"이란 이전 또는	21
증설하는 기업 및 신규투자를	
하는 국내・외기업의 부지매	

입비, 건축비(대수선 및 증축비용 포함),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설 시설비를 말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22. ~ 24. (생 략) <신 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제2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u>업종으</u>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

및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
호, 제7호
<u>따른 근로환경개선</u>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u>투자비</u>
22. ~ 2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물류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시
설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비, 기
반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
에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u>경우</u>

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제30조(지원특례) ①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시장은 기업인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및 <u>모범</u> <u>근로자</u>를 표창하고 기업창립일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물류
 시설(물류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
 양가 지원에 한함)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원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시의 다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시장은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

----- <u>모범</u> 노동자-----

원할 수 있으며, 기업주관 행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남원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후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1호

②・③ (현행과 같음)

보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8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1694 호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이를 통한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 등 남원시의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

- 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 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시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 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2. 협약금융기관과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2. 농산물 재배면적(m²), 지역농협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약정 품종· 수량, 월급제 희망량
- 제5조(지원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남원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남원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

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시

-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 2.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 3.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 유지, 약정 및 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
 -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 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 6. 그 밖의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출하 또는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u>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u>

* 농업인 월급제란 ?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부터 9월까지 월별 일정액 형태로 선 지급하고 수매가 끝난 11월에 정산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남원시에서 농협에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O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Ó	면 락 처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택	
남원시		(마을)		남·여		핸드폰	

O 행정확인

벼	담당자			
재배면적(m²)	성 명	인		

농협수매	월급제	희망량
약 정 량	수량(40kg)	금액(원)

붙임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통장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주소:

성 명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片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8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1695 호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다.
-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 및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 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 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13세 미만의 어린이
- 2. 65세 이상의 노인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 2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 3.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① 관할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 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② 관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 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보

[별지 서식]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신청서						
성 주 소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전화번호					
지 <u>신청인과의</u> 원 관 계	(휴대폰) □ 본인 □ 친족(관계:) □ 기타관계인()					
대 상 대 상 자 구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담 당 공 무 원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자 주택유형	□ 기타 () □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품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서술 가능)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약 (신청인과의 관계 :)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8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1696 호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남원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팩 회수. 재활용 활동 등
- 제3조(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업사이클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 5. 전년도 페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8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1697 호

제31호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치유농업사"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치유농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 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기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 5. 치유농업 전문 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